

2021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형 명	직 령(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 형 과 목
총 계			47명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4.10.)	소 계		34명	
	수의직(수의)	7급	5명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 사 선 임상병리 치과위생 9급	3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2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2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직(운전)	일 반 보훈청 추 천 9급	12명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3명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6명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1명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10.16.)	소 계		13명	
	약무직(약무)	7급	1명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1명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2명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1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공업직 (일반기계)	기술계 고 줄 9급	1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업직 (일반전기)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녹지직 (조경)		1명	필수(3)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 및 시공
	보건직 (보건)		1명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 (일반토목)		2명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설직 (건축)		2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수의·약무7급, 연구·지도직, 의료기술·기술계(60분), 운전직(4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지역제한 :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 충족

- ①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1. 1. 1.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 (2004.12.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라. 학력 및 자격제한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을 취득하여야 함.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면허)증
경력경쟁 임용시험	학예연구(학예일반)	연구사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수의연구(수의)	연구사	•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약무직(약무)	7급	• 약사, 한약사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9급	•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치과위생사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1) 연구직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2) 지도직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연구직·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신청일 또는 지원일)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함.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사.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사람만 응시 가능

※ 응시 희망자는 2021. 2. 26.(금)까지 대구지방보훈청(☎053-230-6075)으로 문의·신청하여야 함.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 대상자도 추천과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아.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 지역요건 :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대구광역시 지역제한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을 추천 가능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 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을 추천 가능

※ 추천대상자(고졸자)는 기술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며, 대학중퇴자(2021.1.1.현재 기준)도 포함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퇴학여부 및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추천 가능

※ 성적합산 기준은 졸업생은 고등학교 전학년,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직무분야별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음.

구 분	직 렬(직류)	직 급	관 련 학 과
기술계 고 졸	공업직 (일반기계)	9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 (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녹지직 (조경)	9급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조경, 시설원에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보건직 (보건)	9급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 (일반토목)	9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 (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 추천과 별도로 추천받은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허위 학력 등 응시자격 미충족 및 응시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21. 6. 23.(수) ~ 6. 29.(화) / 5일간, 09:00~18:00
 □제출방법 :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취합, **관할 교육청 서류 경유(검토)** 후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개별제출 불가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제출서류 : 추천 현황표, 학교장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붙임 “추천서 서식” 참고)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 검사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제1회	3. 8.(월)~3. 12.(금) ※ 취소: 3. 8.(월)~3. 17.(수)	필 기	3. 30.(화)	-	4. 10.(토)	4. 30.(금)
			면 접	4. 30.(금)	5. 15.(토)	6. 15.(화)~6. 16.(수)	6. 25.(금)
	제2회	7. 5.(월)~7. 9.(금) ※ 취소: 7. 5.(월)~7. 14.(수)	필 기	9.16.(목)	-	10. 16.(토)	11. 4.(목)
			면 접	11. 4.(목)	11. 13.(토)	11.23.(화)~11.24.(수)	12. 3.(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인성검사에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접속 후 개인별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여야 함.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까지 24시간 운영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응시수수료 금액>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9급
금액	7,000원	5,000원

라. 응시수수료의 환불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마. 응시원서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규격은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생 본인 얼굴의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해야 함.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장애인·임신부 등)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
-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
-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함.
- ※ 위탁출제 과목 및 자체출제 과목은 붙임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자체출제 안내” 참고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직렬별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또는 구·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2) 연구·지도·기술직군(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마.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 직렬별 적용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존번호 등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공통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음.**

8.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수로 함.

나.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실시,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성검사 결과는 최종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다.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 후 인성검사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평정요소>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결정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 포함)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결정함.

<평정방법>

- ①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을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로 평정함
- 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으로 평정함
- ③ 위의 ①, ②의 경우 외에는 “보통”으로 평정함

-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성적에 관계없이 면접시험의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함.

9. 추가합격제

- 가. (추가면접)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2주 이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나. (추가합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다.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사항 포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답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답안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 및 전산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기술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중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이전까지 대학에 재학·휴학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시험 종료 후 따로 반환하지 않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053-803-27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